

전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단287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훈태

변 론 종 결 2022. 11. 2.

판 결 선 고 2023. 1.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9,497,200원 및 그 중 7,900만 원에 대하여 2021.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C에게 2020. 12. 16.경부터 2021. 1. 27.경까지 7,9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고, C은 2020. 12. 17.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 소외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명의로 매수한 자인바, C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자금인 9,400만 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9,400만 원 중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을 청구한다.

2. 판단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무자력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범

별지